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 한시조직인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8월 9일까지에서 2025년 8월 9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7. 00.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로 보한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 직위를 일반직위로 변경하는 한편,

2023년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4명(9급 1명, 8급 1명, 7급 1명, 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8급 1명, 7급 1명, 6급 1명, 5급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1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2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부 칙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1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각각 “10퍼센트”로 한다.

제23조 중 “전시홍보과장,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을 “전시홍보과장”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6”을 “67”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9”를 “8”로 한다.

별표 8의2 전산주사보 2 다음에 “공업서기 1”을 신설하고, “공업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19 문화재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25조제2항 관련) 다음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존속기한: 2025년 8월 9일)”을 신설하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존속기한: 2023년 8월 9일)”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은 2026년 7월 24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7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 및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8의2의 정원 1명(공업서기 1명)은 2026년 7월 24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7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공업서기보 1명으로 본다.

- 3 -

- 4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재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9명(7급 7명, 8급 2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1조(문화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u>10퍼센트</u> ----- ----- ----- ----- -----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은)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은)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은)	③ ----- ----- ---. ----- ----- ----- <u>10퍼센트</u> -----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은)			
③ 국립고궁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u>7퍼센트</u>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				

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으며, 별표 8의2의 정원 중 1명(7급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삭 제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⑩ 삭 제	
⑪ 국립무형유산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고, 이 중 공연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의2와 같다.	⑪ ----- ----- ----- ----- ----- ----- ----- <u>10퍼센트</u> ----- ----- ----- --.
⑫ ~ ⑭ (생 략)	⑫ ~ ⑭ (현행과 같음)
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 <u>전시홍보과장</u> , 국립문화재연구원 <u>국립증원문화재연구소장</u>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교육과장을 임기	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 ----- ----- <u>전시홍보과장</u> ----- -----

신·구정원대비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 관 · 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u>66</u>	<u>67</u>	+1
•	•	•	
•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임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u>9</u>	<u>8</u>	-1
•	•	•	
•	•	•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u>공업서기</u> · <u>공업서기보</u> · ·	· · <u><신 설></u> · <u>1</u> · ·	· · <u>1</u> <u><삭 제></u> · ·	+1 -1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9]

문화재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5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u>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존속기한: 2025년 8월 9일)</u> <u>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존속기한: 2023년 8월 9일)</u> · ·	· <u><신 설></u> <u>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존속기한: 2023년 8월 9일)</u> · ·	· <u>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존속기한: 2025년 8월 9일)</u> <u><삭 제></u> <u><삭 제></u> ·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존속기한: 2025년 8월 9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존속기한: 2023년 8월 9일)